

● 제277회 ●
서울특별시의회(정례회)
제4차 운영위원회

서울특별시의회 면목선 등 경전철 건설사업 조속 추진
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명칭변경안
검 토 보 고 서

2017. 12. 18.

운 영 위 원 회
수 석 전 문 위 원

【김태수 의원 외 11명 발의】

의안번호 2281

I. 구성결의안 개요

1. 제안경과

- 가. 발의자 : 김태수 의원 외 11명
- 나. 발의일 : 2017. 11. 16.
- 다. 회부일 : 2017. 11. 17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가. 제안이유

- 서울특별시의회는 「지방자치법」 제56조 및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56조, 「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」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「서울특별시의회 면목선 등 경전철 건설사업 조속 추진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」를 2017년 8월 25일부로 구성하였음.
- 당초 서울시는 도시철도 취약지역을 개선하고 대중교통 낙후 지역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발표했으나, 동북선은 협상대상자가 변경되어 실시협약체결 등 후속절차 추진 중이고, 면목선은 '16년 1월 민간 투자대상사업(BTO) 지정 취소로 제2차 도시철도망구축계획 수립 용역을 통해 노선계획과 사업성 확보방안을 검토 예정 중에 있는 등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.

- 이로 인해 면목선 등 도시철도 건설사업 추진여부 자체가 불투명해짐에 따라 해당 지역주민의 상실감과 소외감이 커진 것은 물론 면목선 등 경전철 건설사업을 조속히 추진해 줄 것을 염원하는 민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임.
- 따라서 시민의 대표 기관인 서울시의회는 서울시가 당초 계획한 면목선 등 도시철도 건설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서울시민의 교통 복지를 증진하고, 낙후 지역이 발전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지원 마련을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것임.
- 다만, 『서울특별시의회 면목선 등 경전철 건설사업 조속 추진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』라는 명칭은 도시철도 수단의 한 종류인 경전철로 그 범위를 제한하는 것인 바, 현재 추진 중인 서울시 도시철도 전체에 대한 지원을 담보하기 위해 『서울특별시의회 면목선 등 도시철도 건설사업 조속 추진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』로 명칭변경이 필요함.

나. 주요내용

- 1) 2017년 8월 25일부로 구성된 「서울특별시의회 면목선 등 경전철 건설사업 조속 추진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」의 명칭을 「서울특별시의회 면목선 등 도시철도 건설사업 조속 추진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」로 변경한다.
- 2) 구성결의문에 나타난 특별위원회의 명칭을 모두 변경한다.

II. 검토의견 (수석전문위원 박노수)

1 특별위원회 명칭변경안의 개요

- 서울시의회는 경전철 건설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서울시민의 교통복지를 증진하고자 「서울특별시의회 면목선 등 경전철 건설사업 조속 추진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」를 구성·운영 중에 있음.
- 그러나 특별위원회의 명칭과 활동범위가 도시철도 수단의 한 종류인 경전철로 국한되어 있어, 서울시 도시철도 전체에 대한 지원을 담보하기 위해 「서울특별시의회 면목선 등 도시철도 건설사업 조속 추진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」로 명칭변경을 제안한 것임.

2 특별위원회 명칭 변경의 타당성

- 특별위원회의 명칭은 특별위원회가 심사·처리하기 위한 특별한 사안을 기준으로 부여하고 있으며, 구성 목적과 활동범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.
- 지난 2017년 8월 25일 구성된 「서울특별시의회 면목선 등 경전철 건설사업 조속 추진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」는 서울시가 당초 계획한 면목선 등 경전철 건설사업 추진여부가 불투명해지고 지역주민의 민원이 고조됨에 따라 경전철 건설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독려하고 필요한 지원 마련을 위한 목적으로 활동 중에 있음.
- 그러나 특별위원회 활동 과정에서 경전철 사업의 조속한 추진뿐만 아니라 지역별 도시철도 신설·연장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에 부응하고 도시철도와 연계된 광역철도망 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대책의 점검·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었음.

- 따라서, 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원활하게하기 위해 현재 특별위원회의 명칭을 「서울특별시의회 면목선 등 도시철도 건설사업 조속 추진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」로 변경하는 것은 적절하며,
- 특별위원회의 활동 목적에 부합하는 명칭을 사용함으로써, 특별위원회 활동의 내실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.

「지방자치법」

제56조(위원회의 설치) ② 위원회의 종류는 소관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·처리하는 상임위원회와 특정한 안건을 일시적으로 심사·처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 두 가지로 한다.

③ 위원회의 위원은 본회의에서 선임한다.

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

제56조(특별위원회의 설치) ① 특별위원회는 여러 개의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별한 사안에 대한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 본회의의 의결로 설치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려는 때에는 그 활동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본회의의 의결로 그 활동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
③ 특별위원회는 활동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활동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.

「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」

제37조(특별위원회) ① 의회는 여러 상임위원회의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안건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운영위원회가 특별위원회 구성안을 심사할 경우 관련된 상임위원회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.

③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의 종료시까지 존속한다. 다만, 활동기간의 종료시까지 안건이나 활동결과보고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해당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.

④ 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그 위원회의 존속기간으로 한다.

⑤ 특별위원회 위원정수는 20명 이내로 한다. 다만,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정수는 33명 이내로 한다.

⑥ 특별위원회는 그 위원회의 활동기간이 종료하기 전까지 활동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.

⑦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을 연장하고자할 경우 활동기간이 종료하기 전까지 중간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참고표 2 서울시 도시철도 건설 사업 현황

□ 노선별 현재 진행 현황('17.11)

구분	사업명	사 업 개 요			민간사 업자 (최초제 안사)	비 고
		규모(정거장)	사업구간	사업비(억원)		
운영중	우이신 설	11.4km (13)	우이동~ 신설동	8,077 (불변가 6,465)	포스코 건설	- '17.9.2 개통 (11월 5째주 이용자수 : 78,181명/일)
공사중	신림선	7.76km (11)	여의도~ 서울대	8,050	대림산 업	- 공정률 : 5.49%('17.11월 기준) - '22년 개통목표로 공사추진중
협상중	동북선	13.34km (15)	왕십리역~ 상계역	15,754	현대 엔지니 어링	- '15.12 협상대상자 변경(경남→현대) - '16. 1 본협상 시작(현대엔지니어링) - '17. 7 분야별 협상완료 - '17. 9 시 계약심사단 심사, PIMAC검토 - '17.10 실시협약 행정예고 실시 - '17.11 재정계획심의 가결, 시의회 보고 - '17.12 기재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 예정 - '18. 1 실시협약체결 등 후속절차 추진
민자 적격성 조사중	위례선	5.44km(1 2)	마천역~ 북정	1,800	(두산건 설)	- '15.7. 민간제안 접수 - '15.11 민자적격성조사 의뢰
	위례 신사선	14.83km (11)	위례~신사	14,253	(GS건 설)	- '15. 9 제안서 제출 요청(사→삼성물산) - '16.10.31 삼성물산 제안 제출의사 철회 - '17.1.24 제안서 접수(GS건설) - '17.3.8 민자적격성조사 의뢰(PIMAC)
	서부선	16.15km (16)	새절역~ 서울대입구 역	16,191	(두산건 설)	- '17.2.10 제안서 접수(두산건설) - '17.3.31 민자적격성조사 의뢰(PIMAC)
최초 제안 추진	난곡선	4.13km (5)	보라매공원 ~난향동	3,912	-	- 제2차 도시철도망구축계획 수립 용역을 통해 노선계획, 사업성 확보방안 검토예정
	면목선	9.05km (12)	청량리~ 신내동	8,894	-	- '16.1.15 민간투자대상사업(BTO) 지정취소 - 제2차 도시철도망구축계획 수립 용역을 통해 노선계획, 사업성 확보방안 검토예정
	목동선	10.87km (12)	신월동~ 당산역	9,392	-	- 양천권역 트램도입 타당성용역을 통해 도시계획 차원에서 트램 시 범 도입방안 검토예정 ※ 제2차 도시철도망구축계획과 연계추진
	우이-신 설 연장선	3.50km(3)	우이동~ 방학역	2,890	-	- 제2차 도시철도망구축계획 수립 용역을 통해 노선계획, 사업성 확보방안 검토예정